# 글쓰기 기말보고서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201700000 박성범

제목: 소년 범죄, 엄벌주의는 답이 아니다

주제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교정 및 예방을 중심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 1. 서론

- 1.1. 인천 살인 사건, 부산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이슈,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 빗발침.
- 1.2. 소년법 입법 배경과 내용, 폐지 및 개정 주장을 간략히 소개.

#### 2. 본론

- 2.1. 소년 범죄에는 환경적 요인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 수 없음.
  - 2.1.1. 범죄 소년 대부분이 사회적 소외계층에 속함.
  - 2.1.2. 가정과 학교가 우범 소년을 방치해 실제 범죄로 이어짐.
  - 2.1.3. 한국 소년법의 모델인 독일은 보호관찰제도와 우범 소년 관리가 매우 효율적임.
- 2.2. 엄벌이 범죄 예방과 교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2.1. 과거 엄벌주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범죄 발생률이 증가함.
  - 2.2.2. 엄벌은 낙인효과를 불러와 교정 및 재사회화에 부정적임.
  - 2.2.3. 형 집행 기간 동안 피해자는 소외됨.
- 2.3. 촉법소년 연령 하향, 특정 강력 범죄 처벌 강화 조항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도 위험함.
  - 2.3.1. 일부 사례로 법을 개정할 수 없으며, 실제 촉법소년 범죄 비율은 매우 낮음.
  - 2.3.2. 형사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엄벌주의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
  - 2.3.3. 엄벌화는 사법적 퇴보이며, 처벌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안일한 대처임.

### 3. 결론

- 3.1. 소년법 폐지와 개정을 통한 소년범 처벌 강화는 부작용이 더 크므로 반대함.
- 3.2. 피해자의 회복과 범죄의 교정, 예방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필요함.

## 소년 범죄, 엄벌주의는 답이 아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범행 수법과 과정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사건의 두 범인이 만 16세, 만 18세 청소년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에게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소년 범죄와 소년법에 관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후 9월에는 부산에서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4명에게 폭행당해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어 화제가 되었고, 잇따라 강릉, 아산, 천안의 청소년 폭행 사건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되며논란이 가속되었다.

논란이 된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범의 교정을 목적으로 성인에 비해 낮은 형량을 부과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처분만 선고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게는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 살인 사건의 범인 중 만 16세 김양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 최대 형량인 유기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sup>1</sup> 사건의 충격이 컸던 만큼 판결에 대한 반발도 심했고, 곧이어 소년법 폐지 주장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sup>2</sup>이 2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 하향, 소년범 가석방 요건 강화, 형벌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sup>3</sup> 하지만 단순히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 보인다.

우선 소년 범죄에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배경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거주지 또는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에 속한 청소년은 범죄에 더욱쉽게 노출되며, 실제로 소년범 대부분이 경제적 소외계층에 속한다. 2015년 62,465명의 소년범 중하류층 비율은 59.1%(36,946명), 중류층은 39.9%(24,941명), 상류층은 0.9%(578명)로 집계되었으며,최근 10년중 생활수준을 집계할 수 있는 소년범 인원이 가장 많았던 2009년에도 하류층의 비율은 60.7%(67,041명)이었던 반면 상류층은 0.4%(478명)에 불과했다. 4 경제적 여건이 소년 범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법적 기조를 따른다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놓인 청소년을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구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sup>&</sup>lt;sup>1</sup> "한살 차이로…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보다 공범이 형량 높아", <한국일보>, 2017. 9. 23, 6쪽.

<sup>&</sup>lt;sup>2</sup> 실제 글 제목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였으나, 내용은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sup>&</sup>lt;sup>3</sup> "'소년법 개정안' 나왔다…흉악범죄 청소년, 처벌 강화될까", <중앙일보>, 2017. 9. 7, <a href="http://news.joins.com/article/21915137">http://news.joins.com/article/21915137</a>> (2017. 11. 18).

<sup>&</sup>lt;sup>4</sup> 공존행 외 7명, 『범죄백서 2016』, 법무연수원, 2017, 590쪽.

소년 범죄에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이들이 범죄에 빠르게 빠지는 만큼 교정도 빠르게 이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전에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교정한다면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성인보다 쉽게 방지할 수 있다. 전체 소년범죄의 약 1/4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1/3은 친구들에게만 알려진다는 연구<sup>5</sup>도 있는 만큼 비행 행위가 잦은 학생이나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을 비롯한 우범소년을 교정하려는 학교의 노력은 범죄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학교가 우범소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용 및 관리 방만, 성과 부실, 지속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심지어 지난 4월 일어난 숭의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교가 이를 은폐,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우범소년 관리 정책에도 허점이 많다. 현재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찾아내는 업무는 경찰만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2016년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청소년 134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임을 밝혔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인당 41명을 한참 상회하는 수치다. 영국은 1인당 23명, 호주는 53명, 일본은 70명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 실태는 보호관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한편 한국 소년법제의 모델인 독일 소년법제는 범죄소년을 취급하는 소년법원법과 우범소년을 취급하는 소년복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범죄행위 예방과 비행소년의 재사회화라는 기본적인 목적 위에 복지모델의 소년사법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독일은 소년범죄만을 처리하는 소년법원을 따로 뒀고, 동시에 다양한 처분 유형과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벌이 범죄 예방과 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60년대 후반부터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복귀모델을 부정하기 시작해 70년대부터는 형벌의 근거를 죄에 대한 보복에 두는 응보주의 노선을 걷게 된다. 이후 80년대 말까지 확고한응보주의 노선에 따라 범죄소년에 대한 엄벌을 고수했으나, 그 결과 범죄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말았다. \*\* 뿐만 아니라 엄벌주의는 범죄소년에게 낙인효과를 불러와 교정 및 재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소년범의 범죄 원인은 일시적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가 가장 큰 비

<sup>5</sup> S. Karstedt, "Ambulante Maßnahmen - eine Gefahr für die 'Innere Sichderheit'?", Gass, Kaulitzki ed., Ambulante Maßnahmen und Innere Sicherheit in der Jugendkriminalpolitik, (Bremen: Lüssumer Turnverein), 1992, p.63. 임상규, 「소년법상의 보호정신」, 『교정연구』제15호, 한국교정학회, 2002, 36쪽에서 재인용.

<sup>&</sup>lt;sup>6</sup> 김순양, 손능수,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분석 및 정책적 제언」, 『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19 권 제4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251쪽.

<sup>&</sup>lt;sup>7</sup> 김여경, 『소년범죄 사법처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60쪽.

<sup>&</sup>lt;sup>8</sup> 김성돈,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2, 53쪽.

<sup>9</sup> 윤희중,「소년 사법정책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과 지역공동체」,『피해자학연구』제12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4, 143쪽.

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낙인효과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

더군다나 자유형을 중심으로 한 엄벌주의 원칙을 통해 정말 범죄소년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지, 범죄소년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말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형벌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주어지며, 범죄소년은 형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의식하지 않게 된다. 11 더불어 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듯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모두 범죄소년을 중형에 처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할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바탕으로 범죄 소년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언론도 이러한문제를 심화하는 데 일조했다. 대다수 언론은 범죄 사건의 잔혹함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낸다. 특히 사건 명칭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기사, 제목에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신상을 부각한기사, 본문에 선정적인 일러스트를 삽입한 기사 등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사들은 지금도 무비판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지역사회는 소외된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당사자들을 치유하고, 비슷한 범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벌 그 자체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소년법 폐지라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에 비해 개정에 관한 주장은 보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결국 형사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더욱 강한 처벌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엄벌주의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개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거보다 청소년이 빠르게 성숙해지고 있고, 흉포해져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의 연령을 다시 설정해야한다고 말하지만, 통계자료를 찾아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에 비해 평균 4.4%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5.9%에서 2015년 3.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면서 절대적인 범죄소년 인원도 2008년 126,213명에서 2015년 71,035명으로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12 청소년들이 흉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하기 보다는 "요즘 아이들은 무례하고 거칠다"라는 기성세대의 일반화된 우려에 기반한다. 13 이러한 이유로소년법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은 심지어 1953년 국회에서도 나왔다.

"여기는 여러분도 벌서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네 살 미만 되는 사람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드라도 처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거게가 지금 범죄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액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쓰리<sup>14</sup> 관계는 대개 열두 살, 열세 살, 열네 살이 주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sup>10</sup> 이춘화,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낙인효과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양법학』제29집, 한양법학회, 2010, 96쪽.

<sup>11</sup> 배임호, 김웅수, 하태선, 「소년범죄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회복적 사법정의 관점」, 『한국교 정학회』제51호, 2011, 245쪽.

<sup>&</sup>lt;sup>12</sup> 공존행 외 7명, 앞의 책, 559쪽.

<sup>&</sup>lt;sup>13</sup> 임상규, 앞의 책, 34~35쪽.

<sup>&</sup>lt;sup>14</sup> 소매치기.

열네 살로 하면 이 쓰리의 조장이 대단히 많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을 13세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15

백남식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발언의 요지는 당시 청소년들이 범죄를 행하는데 능숙하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6 이는 소년범죄를 다루는 오늘날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통해 시대에 상관없이 청소년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07년에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과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우려가 커지자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을 만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했다. 불과 10년 전에소년법을 개정해두고 청소년의 흉포화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이유로 소년법을 또다시 개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

현재 우리 사법 제도는 범죄자의 교정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엄벌주의를 고수한 과거 정책과 그 실망스러운 결과를 생각한다면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법적 퇴보라고 볼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에서 봐도 한국의 소년법 연령은 평균적인 수준이며,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일이다. 더불어, 행위와 권리에 다양한 제재를 받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특성과 교정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강한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안일한 대처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중형이 범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낙인효과를 강화해 재범률을 높이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불어 형 선고 및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지역사회가 소외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도 엄벌주의는 설득력을 잃는다. 뿐만 아니라 소년 범죄 비율은 성인에 비해 매우 낮으며, 발생 건수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는 극단적인 범죄 사례와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왜곡된 인식이대다수 청소년의 교정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 범죄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교정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우범소년 관리와 보호관찰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 범죄에빠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는 처벌 강화에 관한 논의를 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범죄의 예방 및 교정, 그리고 재범 방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필요한 시기다.

<sup>15</sup> 백남식 의원 발언, 『제2대 국회 제16회 제10차 국회본회의 형법안 제1.2독회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 10호』, 국회사무처, 1953.6.26, 4쪽.

 $<sup>^{16}</sup>$  1953년 형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 형법을 의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형사미성년자연령이 만 14세였다.

## 참고문헌

#### 1. 국내 논문 및 단행본

강경래,「개정소년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검토」,『강원법학』제2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7.

공존행 외 7명, 『범죄백서 2016』, 법무연수원, 2017.

권근희, 『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성돈,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2.

김순양, 손능수,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분석 및 정책적 제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4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김여경, 『소년범죄 사법처리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박영규,「소년법상의 소년연령에 관한 고찰」,『소년보호연구』제28권 제4호, 한국소년청책학회, 2015.

배임호, 김웅수, 하태선, 「소년범죄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회복적 사법정의 관점」, 『교정연구』제51호, 한국교정학회, 2011.

윤희중, 「소년 사법정책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과 지역공동체」,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 피해자학회, 2004.

이춘화,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낙인효과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9집, 한양법학회, 2010.

이훈재, 「소년범죄의 실태 및 동향」, 『소년보호연구』 제2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임상규, 「소년법상의 보호정신」, 『교정연구』제15호, 한국교정학회, 2002.

임재식, 「소년범죄 현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제8권 제2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08.

## 2. 기사

"한살 차이로…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보다 공범이 형량 높아", <한국일보>, 2017. 9. 23.

"'소년법 개정안' 나왔다…흉악범죄 청소년, 처벌 강화될까", <중앙일보>, 2017. 9. 7,

<a href="http://news.joins.com/article/21915137">http://news.joins.com/article/21915137</a>> (2017. 11. 18).